

제342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4. 24 ~ 4. 28)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1회 정례회

(2017. 4. 24 ~ 4. 28)

제342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한다는 신록의 계절에 제34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은 촛불이 이끌어 낸 조기대선을 앞두고 온 국민이 모처럼 새로운 희망의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추락한 나라의 명예를 되찾고 분노와 실의, 허탈과 낙심에 빠진 국민을 보듬어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무겁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이번 대선을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감히 주문합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SNS상의 그 어떤 부정선거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의정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거나 오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는 물론 대선 정국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민생현안과 의료, 소방, 식품, 산불감시 등 안전대책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우리 지역에서 5월과 6월에 열리는 피파(FIFA) U-20 월드컵 코리아와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체육 이벤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점검과 숙박, 교통, 관광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대선기간에 열리고 회기도 짧지만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2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4. 19(수)
- 집회 일자 : 2017. 4. 24(월) 14:00
- 집회 사유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전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4. 24 ~ 4. 28(5일간, 2017년 : 32일, 총누계 448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10, 총 누계 86)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2회 임사회	8	1	2	1	1	1	1	1
2017 년도	48	5	10	7	8	8	8	2
총 누 계	746	52	156	104	118	126	139	48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4.24(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환 의원, 이호근 의원, 백경태 의원, 최영일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현안질문 2.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조선소 외면하는 정부규탄과 대선후보들의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4.28(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완 의원, 한완수 의원, 장명식 의원, 송지용 의원, 김현철 의원, 최영규 의원, 국주영은 의원, 최인정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4.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15.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 16.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17.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 18.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 위원회	4.24(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의 건 -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도서관실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 결산심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의 건 	
행정자치 위원회	4. 24(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4. 26(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복지 위원회	4. 24(월)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공공야간 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산업경제 위원회	4. 24(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4. 24(월)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향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위원회	4. 26(수)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 -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 현지 의정활동 - 전북과학교육원 	
특별 위원회	4. 28(금)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새만금투자 MOU 조사특위 회의 - 증인신문, 전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 등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2회 (2017. 4. 28기준)

구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금회	21	14	9	5	1		1			4	1	
	누계	1026	582	258	324	10	12	1	233		35	118	45
의회	소계	금회	17	11	9	2	1					4	1
		누계	543	362	225	137		12	1	7		118	43
	의원	금회	17	11	9	2	1					4	1
		누계	479	362	215	137		11		3		107	17
	위원회	금회											
		누계	44					1	1	4		12	26
도지사	금회	1	1		1								
	누계	368	169	29	133	7			174		19		
교육감	금회	3	2		2				1				
	누계	120	51	4	44	3			52		16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42회 (2017. 4. 28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1	20	18	2				2		
	누계	1026	1002	841	132		16		13	24	
조 례 안	소계	금회	14	13	11	2				2	
		누계	582	560	444	107		3		6	22
	의회	금회	11	10	8	2				2	
		누계	362	343	274	64				5	19
	도지사	금회	1	1	1						
		누계	169	167	126	38		2		1	2
교육감	금회	2	2	2							
	누계	51	50	44	5		1			1	
규 칙 안	금회	1	1	1							
	누계	12	11	11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1	1	1							
	누계	233	232	210	7		10		5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35	35	16	17		2				
건의결의안	금회	4	4	4							
	누계	118	117	114	1		1		1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45	45	45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6	14	1		1					15	13	2			2	
	누계	875	577	12	1	226		21	17	3	851	704	116	16	12	24	
운 영 위 원 회	금회	3	2	1							2	2				1	
	누계	54	35	12	1				6		18	44	1	1	2	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회	3	3								3	3					
	누계	173	126			35			2	1	171	148	21	2		2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회	1	1													1	
	누계	123	103			17			3		118	97	18	1	2	5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회	3	3								3	2	1				
	누계	147	75			69			3		142	117	17	7	1	5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회	2	2								3	2	1				
	누계	158	100			54			4		157	123	24		3	1	
교 육 위 원 회	금회	4	3			1					4	4					
	누계	180	126			51		1		1	173	147	19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36						34	1	1	36	18	16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5						4	1	5	5					
	누계	151	1			7		104	39	151	148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1	14	1		1		4	1	20	18	2			2	
	누계	1026	582	12	1	233		118	45	1002	841	132	16	13	24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42회 (2017. 4. 28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026	582	258	324	10	12	1	233		35	118	45
의 회	소 계	543	362	225	137	12	1	7			118	43
	의 원	479	362	215	137	11		3			107	17
	위 원 회	44				1	1	4			12	26
전라북도지사	368	169	29	133	7			174		19		
전라북도교육감	120	51	4	44	3			52		16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2회 (2017. 4. 28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026	1002	841	132		16		13	24	
조 례 안	소 계	582	560	444	107		3		6	22
	의 회	362	343	274	64				5	19
	도 지 사	169	167	126	38		2		1	2
	교 육 감	51	50	44	5		1			1
규 칙 안	12	11	11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233	232	210	7		10		5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5	35	16	17		2				
건 의 결 의 안	118	117	114	1		1		1	1	
기 타 의 안	45	45	45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박재완 의원 외 21인	제 출 일 자	2014. 10.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제7조제5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도의회 의원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을 배제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5항)

< 수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p> <p>1. 도의회 의원</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1. 도의회 의원 <u>다만,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u></p>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양용모, 최영일, 김대중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3.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4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사이버음란물 등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라북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 제공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통계)의 자동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안 제16조)
- 라.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자격보유 공무원의 배치와 전문직위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북도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화재피해 주민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 증명원 발급 수수료 삭제
- 나. 모법 개정으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 화재 증명 발급 수수료 : (기존) 800원 ⇨ (개정) 무료
 - ※ 현행 수수료 95종 ⇨ 개정 94종(삭제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4.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직속기관 중 위치 변경 및 분장 사무의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치 위치 변경(안 제11조의 2)
- 나.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분장사무 추가(안 제11조의 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6.7.12.)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내용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35조·제38조·제58조)
-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2조, 제61조)
- 다.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3조, 제21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화정유치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주〇〇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지구 내 가칭 ‘전주솔내초등학교’ 를 설립함에 따라,
- 유아교육법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 개발지구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한 가칭 ‘전주화정유치원’ 을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m², 천원)

지역	학교명 ('가칭')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
		일반	특수	합계					
전주	화정 유치원	9	1	10	183	전주시 호성동2가 758-10잡 일원	2020.3.1.	9,856,166	신설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학수·강용구·김현철·박재만 백경태·양용호·이현숙·정진세 의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제3 조)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협의기구인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학습더딤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습더딤학생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학습더딤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학습더딤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학습더딤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교육감 소속 학습더딤학생 교육지원자문단을 설치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재만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해야 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송지용·정진세·박재완·강용구 이도영·이혜숙·최영규·최영일·최은희 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연장(5월 10일 → 5월 31일)됨에 따라 결산검사 완료시기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 완료 시기 변경(안 제8조)
 - 검사완료 시기를 4월 20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최영일·송지용·정진세·박재환·강용구 이도영·이혜숙·최영규·정호운·최은희 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의 장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5분자유발언 시간범위를 40분 이내 에서 50분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상임위원회별 추천으로, 발언순서를 발언신청 접수순에서 상임위원회 건제순으로 개선하여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 변경(안 제33조제1항)
 - 1) 시간범위를 40분 이내에서 50분 이내로 변경
- 나. 5분 자유발언의 신청방법 변경(안 제33조제2항)
 - 1) 신청방법을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에서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발언원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변경
- 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 변경(안 제33조제3항)
 - 1) 발언순서를 발언신청 접수순에서 상임위원회 건제순으로 변경

전라북도 향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재완·양용호·이성일·최인정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자동차 환적화물은 군산항의 주요 취급 화물로 자동차 수출 물동량 상승을 견인하며 전북 향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향만 간 자동차 화물 유치 경쟁이 가열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자동차 환적 화물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향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제명 개정(안 제1조)
- 나. 자동차 환적화물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다. 재정지원 대상에 “자동차 환적화물” 추가(안 제3조제2항)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진호·한완수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전라북도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 제4조)
- 나.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5조)
- 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과 지원방법을 규정(안 제6조)
- 라.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정진세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육성정책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제10조)
- 라.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④ 공유경제 기업과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시장 충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p>	<p>제3조(책무)④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내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p>

<p>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공유경제 교육·홍보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사업)----- -----추진할 수 있다.</p> <p><삭제> 1~7(제정안과 같음)</p> <p><삭 제></p>
--	---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4. 19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재 각 부서별 특정사업 홍보(국제행사, 축제 등)를 위해 위촉·운영 중인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특정사업이 아닌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기간(2년 이내)을 정해 활동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도정 홍보에 참여
- 문화, 예술, 관광,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전라북도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홍보대사의 위촉 요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다.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라. 홍보대사의 해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마. 홍보대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바. 홍보대사의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7조)

군산조선소 외면하는 정부규탄과 대선후보들의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7. 4. 2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4. 2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각 정당 대통령 후보, 현대중공업이 현재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 사태처럼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회는 비상식적인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
- 나. 대우조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촉구한다.
- 다.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의안번호 1023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제 출 일 자	2017. 4.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4. 25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 위원 선임안

추 천 의 원		비 고
소속위원회	성 명	
환경복지위원회	최 명 철	국민의당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7. 4. 2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어업생산량의 감소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의 변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윤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 정책이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43,717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62,357천㎥의 바다모래를 채취·공급하면서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
- 그동안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외쳐왔으나 정부는 피해대책은커녕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음
- 더 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 가.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 나.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다. 정부는 더 이상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4. 2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범정부차원 대책을 촉구하며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군산항의 항구적인 문제인 항로 준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 다. 군산항의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을 촉구한다.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4.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4. 2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5. 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교육부는 2015년 1월 ‘학교에서는 단순히 성(性)에 대한 문제해결 차원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性)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性)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며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의견수렴과정과 전문성, 내용상 편향성과 잘못된 성교육 관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고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발휘되기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여성과 유아, 십대 등의 성은 ‘폭력’, ‘위험’과 주요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그 존재 자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단체, 기관으로 구성된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라!
- 나. 국가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4. 24 ~ 2017. 4. 28)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4	2							1					1
2017년 누 계	10	2	1					1	2	2	1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4	4	4				
2017년 누 계	10	10	8		2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4	2	2				2
2017년 누 계	10	8	8				2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4. 28)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75	75	75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7	7	7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9	9	9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6	26	26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7	7	7			
금회	소 계	4	4	4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1	1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	1	1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1	1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79	79	79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8	8	8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9	19	19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0	10	10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6	26	26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8	8	8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4. 24 ~ 2017. 4. 28)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57	57		100	
	누 계	109	109		100	
도	금 회	49	49		100	
	누 계	95	95		100	
교육청	금 회	8	8		100	
	누 계	14	14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4. 24 ~ 2017. 4. 28)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57	0	16	8	10	8	14	1
	누 계	109	0	23	17	17	22	29	1
도	금 회	49	0	16	8	10	8	6	1
	누 계	95	0	22	17	17	22	16	1
교육청	금 회	8	0	0	0	0	0	8	0
	누 계	14	0	1	0	0	0	13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7. 4. 28)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883	1883		
전라북도	1439	1439		
교 육 청	444	444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7. 4. 28)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883	439	273	210	332	573	42	14
전라북도	1439	402	253	199	310	248	21	6
교 육 청	444	37	20	11	22	325	21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4. 28)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6369	1772	678	860	949	1662	279	169
전라북도	5271	1678	633	826	871	1037	156	70
교 육 청	1098	94	45	34	78	625	123	99